

기존 규제 재정비에 적극적인 일본 정부

■ 개정 에너지 사용에 관한 법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에너지 관리 체계를 사업자 단위로 변경

2009년 4월에 일부 시행된 에너지 사용에 관한 법률이 2010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요점은 ‘사업자(기업) 단위의 규제체계 도입’에 있다. 종래에는 공장이나 사업장 단위로 실시된 에너지관리 체계가 사업자(기업)단위로 변경됨에 따라 종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프랜차이즈 체인 등 많은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된 셈이다. 특히 사업자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파악하여 에너지 사용합계가 원유 환산 치로 연간 1,500kℓ 이상인 경우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그 사업자를 ‘특정사업자’로 지정하고, 특정사업자는 ‘에너지관리통괄자’, ‘에너지관리기획추진자’를 각각 1명씩 선임하여 정부에 보고하게 되어있다. 특정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조치 실시 등을 통해 연간 평균 1%이상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특정사업자는 에너지소비 삭감에 관한 중장기 계획서나 정기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강화된 규제 대응에 분주한 일본 기업들

일본 최대 편의점인 세븐 일레븐 저편은 2008년부터 에너지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비해 환경 배려형 점포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태양광발전 시스템이나 LED조명 등을 도입하였다. 세븐 일레븐이 2010년 1월에 교토에서 개장한 환경 배려형 점포에서는 태양광발전, 톱라이트, LED조명 외에 냉장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배열을 이용한 급탕설비, 에너지 절약형 공조 시스템 등 최신 에너지 절약 설비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전기자동차용 충전기를 설치하기도 하여 획기적인 친환경 점포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세븐 일레븐과 같은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설비 도입은 앞으로 편의점뿐만 아니라 패밀리 레스토랑, 약국, 할인점 등 프랜차이즈 체인을 운영하는 많은 기업 차원에서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관련시장 확대가 전망되어, 각종 에너지 절약 설비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기회 확대도 예상된다.

■ 개정된 화학물질 심사 및 제조에 관한 법률 일부 시행 예정

2010년 4월부터 감시화학물질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전확인제도를 변경한 개정된 화학물질 심사 및 제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에 대한 규제는 인간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동식물의 생식 및 생육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분류에 따라 제조 및 수입 시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화학물질은 유해성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제 1종 혹은 제 2종 특정 화학물질로, 독성우려가 있

거나 독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 1종, 제 2종, 제 3종 감시 화학물질로 분류된다.

기존 법률에서는 환경 중에서 분해가 어려운 화학물질만 규제대상이었던데 반해, 이번 개정에서는 분해가 용이한 화학물질도 환경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제 2종 혹은 제 3종 감시 대상에 포함시켰다.

저 위험 고분자 화합물의 사전확인제도도 변경된다. 즉 신규 고분자 화합물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전 확인에 의해 저 위험 고분자 화합물로 간주되어 종래 필요했던 시험이 면제된다. 적용의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공표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스톡홀름 조약에 의해 제 1종 특정 화학물질에 아래의 사항이 적용된다.

- ① Perfluoro(Octane-1-Sulfonic acid, 일명 PFOS) 등 9 종류의 물질(12물질)을 제 1종 특정 화학물질로 지정
- ② 제 1종 특정 화학물질에 대해 지정용도(Essential use) 외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
- ③ 제 1종 특정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 기술상 지침 등에 따라야 하는 제품 지정
- ④ 제 1종 특정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 수입할 수 없는 제품의 지정

■ 화학물질 배출량·이동량 신고(PRTR;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제도 대상 화학물질 확대

PRTR제도¹⁾란 법령에 의해 지정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지정 화학물질의 배출량·이동량을 파악하여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환경이나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어떤 발생원으로부터 얼마나 환경에 배출되고 이동되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집계하여 공표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화학물질이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쳐 환경리스크를 높게 만들 수 있다는 인식하에 만들어진 것으로 1999년에 제정된 ‘특정화학물질의 환경에 대한 배출량의 파악 등 관리 개선 촉진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배출파악관리촉진법, 화관법)’을 근거로 하여 2000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신고 대상으로 포함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자는 배출한 화학물질의 종류, 양, 폐기물로서 처리하기 위해 사무소 밖으로 이동시킨 양을 파악하여 1년에 1회 정부에 제출한다. 정부는 그 데이터를 종합하고, 대상이 아닌 사무소, 가정, 자동차 등에서 배출된 대상 화학물질의 양을 추정하여 두 종류의 데이터를 동시에 발표한다. 이러한 데이터가 집계되어 발표됨으로써 사업자, 시민, 정부가 공동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리스크를 감소시켜 나가자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2010년 4월부터는 이 규제에 포함되는 대상 화학물질이 확대되고 대상 사업자가 추가될 예정이다. 기존의 대상 화학물질 354개 중에서 환경에 대한 리스크가 낮다고 평가된 57개 화학물질이 삭제되고, 포름알데히드, 납 화합물 등 신규 물질이 추가되어 462개 물질로 확대된다. 한편 신규 대상 사업자로 의료업계가 추가되는데, 상용 고용자수 21명 이상의 병원, 의료 부대서비스업, 노인 보건 시설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개정된 법규 시행으로 최근에 그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된 포름알데히드, 납 화합물에까지 규제 영향력이 확대되어 유해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데이터 축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한국기업도 일본에 화학제품을 수출할 때 이러한 데이터를 요청받을 가능성이 앞으로 더욱더 높아졌으므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K**



점포천장에 태양광발전 패널을 설치한 세븐 일레븐의 환경 배려형 점포



(사진: 세븐 일레븐)

¹⁾PRTR제도에 대하여는 정부(환경성)가 운영하는 웹사이트(<http://www.env.go.jp/en/chemi/prtr/prtr.html>)에서 열람 가능